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373

발의연월일: 2021. 5. 25.

발 의 자:이종성·정운천·이종배

박형수 · 김승수 · 임이자

김영식 • 유한홍 • 최형두

김형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으며,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,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.

그런데 영업자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고,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회수·폐기 명령 등 처분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영업자가 행정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.

이에,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(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)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,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위해 축산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제6항 및제24조제6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중 "제6항"을 "제7항"으로 한다.

⑥ 제5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제27조,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(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)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.

제24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2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제27조,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(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)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

없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 제22조(영업의 허가) ① ~ ⑤ (생 제22조(영업의 허가) ① ~ ⑤ (현 략) 행과 같음) <신 설> ⑥ 제5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 는 자는 제36조 및 제37조의 규 정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제27조, 제36조 및 제37조의 규 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 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 인 기간(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 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 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 다)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. ⑥ (생략) 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 ⑦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 • 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 ----- 제7항-----간 내에 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 니하면 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날

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 다.

제24조(영업의 신고) ① ~ ⑤ (생략)

<신 설>

⑥·⑦ (생략)

--.

제24조(영업의 신고) ① ~ ⑤ (현 행과 같음)

⑥ 제2항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제27조,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(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)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없다.

<u>⑦·⑧</u> (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)